

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14일
제출인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(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 번호 기재)			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		
	주소	(전화번호:)			
영업소예정소재지		(전화번호:)			
처리시설 및 실험실 예정소재지		(전화번호:)			
가축분뇨관련영업의 종류		[] 가축분뇨수집·운반업 [] 가축분뇨처리업 [] 가축분뇨시설관리업			
처리시설 (처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처리방법	처리공법	용량(㎥/일)	수량	
변경내용					
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(신고)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시설·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서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- 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
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
-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
가. 가축분뇨수집·운반업 : 수집·운반 예정량(수집·운반 예정구역 등을 포함합니다)
나. 가축분뇨처리업 : 가축분뇨의 처리예정 물량
다. 가축분뇨시설관리업 :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대행관리 예상시설 수
라.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산정한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

처리절차

